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
------------	-----

발의연월일 : 2016. 6. 17.

발 의 자 : 경대수 · 정태옥 · 송석준
정유섭 · 염용수 · 윤한홍
김선동 · 이명수 · 박덕흠
이종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신체적 상이 등으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취
업에 필요한 자격·경력 또는 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훈련 및 자립지원에 관
한 사항

마. 국가 등 취업지원기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무고용 이
행촉진 및 그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 과제 및 그 추진방법</u></p> <p><u>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사항</u></p> <p><u>나. 신체적 상이 등으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u></p> <p><u>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경력 또는 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u></p> <p><u>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에</u></p>

	<p><u>필요한 재활훈련 및 자립</u> <u>지원에 관한 사항</u></p> <p><u>마. 국가 등 취업지원기관의</u> <u>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u> <u>무고용 이행촉진 및 그 취</u> <u>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u> <u>또는 제재 등에 관한 사항</u></p> <p><u>바.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안</u> <u>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u></p>
<u>3. ~ 5. (생 략)</u> <u>(3) • (4) (생 략)</u>	<u>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u> <u>호까지와 같음)</u> <u>(3) • (4) (현행과 같음)</u>